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10. 17.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10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7. 10. 1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김 정 수

가. 개정이유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부에서 각급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후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등을 위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 600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종전에는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1997. 9. 1일부터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전입신고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지? 별도 청구서식에 받는지?
- 답변요지(김정수 세무1과장) : 별도 청구서식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음.
- 질의요지(한수균 위원) : 전입신고일자가 확정일자 인지? 확정일자 청구일이 확정일자 인지?
- 답변요지(김정수 세무1과장) : 확정일자 청구일이 확정일자임.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은 언제 받았는가?
- 답변요지(김정수 세무1과장) : '97년 8월 12일에 내무부지침을 받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이미 9월 1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본 조례안 개정 전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징수할 수 있다면 조례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지?
- 답변요지(김정수 세무1과장) : 수수료징수조례안 개정후에 수수료를 징수하여나 하나 본 개정조례안 입법에고등 다소 시일이 걸려 금번 임시회에 안전을 제출하게 됨.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본 제도가 '97년 9월 1일 부터 효력이 있지만 청구수수료는 조례개정이 선행된 후에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답변요지(문엽승 재무국장) :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우리구만 조례개정이 안되었다 하여 수수료를 징수 안할 수 없는 실정임. 차후로는 적기에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1997.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改定理由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각급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후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 2. 主要改定骨子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 600원

### 3. 改定根據

-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 제128조제2항
-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
  - \* 공무소에 읍·면·동·출장소도 해당
- 시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1995. 11. 20 대법원규칙 제1400호)
- 행정 13210-1083('97. 8. 12)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 (서울특별시)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필요없음

- \* 별 첨 :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1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2종)”으로 하고, 종목란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에 관한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별표&gt;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1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종 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th> <th style="width: 5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 ~ 파(생략)  (신 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 파(생략)  (신 설)				<p>&lt;별표&gt;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2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60%;">종 류</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 ~ 파(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 파(현행과 같음)				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 파(생략)  (신 설)																					
종 류	단위	수수료	비고																		
가 ~ 파(현행과 같음)																					
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